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2018.1.17.)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3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5
4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7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11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대표발의(10명)

(공동발의: 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김향란,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표주숙, 김종두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정이유

-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아동학대 예방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우리 사회가 문명화와 더불어 물질만능 및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화 됨으로 인해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져 가고 부모 자식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나.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표출하면서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러한 문제를 법이나 조례로서 다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6명)

(공동발의: 박희순, 이성복, 표주숙, 변상원, 김종두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홍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사람의 사망 원인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단순히 노환 등으로 판명 하였으나, 요즘은 환경파괴, 기후 변화, 차량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희귀병과 사고사 등 사망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
- 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해 5,200여명인데 반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무려 27,000여명이 넘고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에 해당 된다.
- 다. 그리고 발생 장소가 집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익히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급성 심정지는 골든타임이라 하는 4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필요하므로 누구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 등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정이유

-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 규정함(안 제3조)
- 나. 주요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견해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항에 따라 둘다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2017년까지 6,644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합 문화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지체, 시각, 농아 등)가 한 건물에 사무소를 두게 되어 한가족이 되었고 또한 주변에 종합병원, 보건소, 삶의 쉼터가 있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라.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시설들이 증가하므로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부담이 과중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도비 사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마.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안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2016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을 설치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 사 업 자: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대표: 표재홍)
- 발전용량: 52.36kW
- 사 업 비: 163,500천원(발전소특별회계 전력사업기반기금-국비)

나. 추진사항

- 2016.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17.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국비)
- 2017.09.: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 통보

다.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

위 치	건축 면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합 계	648㎡	383.04㎡	52.36kW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남상면 무촌리 632-2)	465㎡	305.62㎡	38.76kW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 대표 표재홍
남상면 복지회관 (남상면 무촌리 632-2)	183㎡	77.42㎡	13.60kW	"

라.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연간 사용료: 1,457,290원(부가세 포함)
 - 철거(원상복구)비용: 7,335,000원(보증보험 보증서 징구)

마. 연간 예상발전 수익 및 용도

- 연간 예상발전 수익: 13,409천원

구 분	인증서 판매분(한전)	SMP 판매분(전력거래소)	비 고
산 출 액	8,620천원	4,789천원	
산출근거	설치용량×일평균발전시간 ×365일×가중치×인증서 가격	설치용량×일평균발전시간 ×365일×SMP	
산출산식	52.36kW×3.58×365일 ×1.2×105원	52.36kW×3.58×365일×70원	

- 수익금 사용: 남상면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체육대회 행사 지원 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 조항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다. 지방의회가 동의에 대한 심의를 할 사항은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데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2016. 10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2017.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국비)을 교부하고, 2017. 12. 27 사업이 완료 되었음.
- 마.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당초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의회 동의를 얻은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안이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 마.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제27조)
-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 나. 우리군은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2013. 12. 31 조례 제2181호)하고 2014. 10. 30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AFHC)회원도시로 가입, 동년 12. 3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회원도시로 가입하였음.
- 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자치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의협의체 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영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라. 건강도시협의회는 목적이 타당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